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공무원 채용공고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공무원(행정실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인원	근무예정기간	담당직무	근무처
공무원 (행정실무원)	1명	2025. 1. 1.~ (주 5일 근무)	- 귀농·창업교육 및 현장컨설팅 - 영농기술·귀농·경영 등 상담 - 귀농 관련 교육·사업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2. 근무조건

가. 신 분: 공무원 근로자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
- 「근로기준법」,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 단,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노동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는 계약 해지

나.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다. 보 수: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규정」 및 강원자치도 공무원 임금 지급기준(임금협약서 근거)에 따름

구 분	기본급(월)	급식비(월)	교통비(월)	직무수당(월)	비고
1호봉	2,009,200원	140,000원	100,000원	50,000원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지급

라. 기타사항: 4대보험, 퇴직금, 휴가, 맞춤형 복지 등 지원

3. 응시자격

※ ‘가’~‘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마’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18세 이상(2006. 12. 31.이전 출생자) 60세(정년) 미만인 사람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나.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다. 귀농·귀촌, 영농기술, 농업경영 상담 및 현장 컨설팅 또는 교육·강의 등 관련 업무 경력자

라. 우대요건: 면접시험 동점자 처리 시 우선 선발

항목	대상 및 기준	※ 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업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 가공, 유통·마케팅 등 농업경영 경력자 농업 분야 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컴퓨터 활용(한글, 엑셀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관련: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미만인 본 채용시험에는 해당사항 없음

마. 응시 결격사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15조(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관계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15조(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4. 시험방법

가. 1차(서류전형): 합격자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응시자의 자격·우대조건 등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준과 채용 분야(업무)에 적합한지 심사 후, 적합·부적합 결정

나. 2차(면접전형): 합격자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개별면접)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로 통지 예정이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평정요소*마다 각각 점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4개): 창의력 및 발전 가능성, 직무 전문성, 의사표현의 정확·논리성, 예의·품행 및 조직적응력

** 불합격 기준: 1.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중 2개를 최하점 평정

2. 면접위원 과반수가 4개 중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최하점 평정

- 동점자 처리 순서: 1차-업무 관련, 2차-취업지원 대상자
- 면접시험 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의 발생,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으로 채용되지 못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 순위 응시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접수기간	접수방법			
'24. 12. 6.(금) ~ 12. 12.(목)	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12. 12.(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2. 16.(월) 13:00	12. 17.(화) 14:00	12. 20.(금)

가. 접수처: (우편번호 2420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인재육성팀(☎033-248-6118)

나.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처 제출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12. 12.(목)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제출자는 반드시 전화(033-248-6118)로 접수 여부 확인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원서 1부 【서식 1】 <hr/> ○ 이력서 1부 【서식 2】 * 이력서 내용은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hr/>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hr/>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4】 <hr/>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서식 5】 <hr/>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서식 6】 <hr/>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전사항 포함) * 단, 남성은 병적사항 포함
해당자 한함 * 제출 여부는 응시자의 자율 판단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업무, 근무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hr/> ○ 우대사항 증빙서류 (예) 농업 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7. 유의사항

- 가. 반환청구서를 요구하지 않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나.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정합격 확인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다. 응시자는 자격 요건 및 근무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서제출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라. 본 채용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임.
- 마.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033-248-6118)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6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서식 1】 응시원서

응시원서

다음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채용계약 해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응시번호		응시구분(직종)	공무직(행정실무원)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휴대전화)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주 요 경 력	기 간	직장명	직 위	담당업무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무직(행정실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응 시 표	*응시 번호	응시 구분 (직종)	공무직 (행정실무원)	성명	
	생년월일				
	2024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① 생년월일 : 생년월일만 기재(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② 주 소 :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
- ③ 사 진 :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규격:3cm×4cm)을 부착
- ④ 자격면허 :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기재
- ⑤ 주요경력 : ‘기간제 근로’ 등 해당분야 사회경력을 기재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 및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응시자는 2개 이상의 응시원서 중복 제출은 불가함.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렬
		공무직(행정실무원)

(분량 : A4용지 3매 이내)

- 자신의 이력, 지원동기, 주요 경력 등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기술

공정채용 확인서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사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근무하고(있다. / 없다.)

2. 1번 질문과 관련하여 친인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 표 기재.

구분	성명 (본인)	친인척 직원				
		이름	부서명	재직여부	본인과의 관계	기타
해당	○○○	○○○	○○○○팀	○	4촌	
미해당	-	-	-	-	-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고(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친인척 재직 여부 확인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직원과의 관계 및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채용 관련 목적을 달성할 경우 파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공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 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공고 이후 14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mjk999@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 우편요금은 수취인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기관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1월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 청구요청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